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본 모집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결과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홈페이지] www.kmou.ac.kr/ipsi/main.do

2022. 5.

한 국 해 양 대 학 교
(입학본부 입학과)

목 차

I 전형 안내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2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3
4. 전형요소 및 배점	6
5. 합격자 선발 방법	7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8
7.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9
8. 원서접수	11
9. 지원자 유의사항	13

II 지원 서식

【서식1】 입학원서	15
【서식2】 종합기록표	17
【서식3】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19
【서식4】 건강진단서	22
【서식5】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24
【서식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25

III 별 표

【별표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27
【별표2】 입학관련 학내 전화번호	28

1

전형일정

구 분			전형 일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2. 7. 4.(월) 09:00 ~ 7. 8.(금) 18:00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인터넷으로만 접수
서류 제출			2022. 7. 4.(월) 09:00 ~ 7. 15.(금) 18:00	[제출처]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입학본부	■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지원자격 심사 결과 발표			2022. 8. 11.(목) 10:00	입학정보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고사 방법 안내			2022. 8. 18.(목) 14:00	입학정보 홈페이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면접고사			2022. 8. 25.(목) 14:00	모집단위별 지정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면접고사 실시
합격자 발표			2022. 9. 15.(목) 10:00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등록 안내"참조	■ 개별 통지하지 않음 ■ 별도의 예치금이 없으며, '온라인 문서등록'으로 대신함 ■ 기한 내 미등록 시 합격을 취소함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발표	2022. 12. 20.(화) 10:00		
		등록	2022. 12. 21.(수) 16:00까지		
	2차	발표	2022. 12. 22.(목) 10:00		
		등록	2022. 12. 23.(금) 16:00까지		
	3차	발표	2022. 12. 24.(토) 10:00		
		등록	2022. 12. 26.(월) 13:00까지		
	4차	발표	2022. 12. 26.(월) 18:00		
		등록	2022. 12. 27.(화)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 2. 9.(목)	전국 농협 (단위농협 포함)	■ 은행 업무시간 내 납부

※ 위의 일정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모든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 또는 입학정보 홈페이지(www.kmou.ac.kr/ipsi/main.do)를 통하여 공지하므로
원서 접수 전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2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① 재외국민 : 입학정원의 2%범위(모집단위별 10%이내)에서 선발

※ 최대선발가능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내 인원임

②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인원 제한없이 약간명 선발

계열	단과 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최대선발 가능인원	비고
자 연	해사 대학	항해융합학부		약간명 (10명 이내)	17	
		기관시스템공학부			17	
		해양경찰학부	항해전공		3	
			기관전공		3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6	
자 연	해양 과학 기술 융합 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약간명 (12명 이내)	4	
		해양공학과			2	
		에너지자원공학과			3	
		해양공간건축학부			4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환경학전공		2	
			해양생물공학전공		3	
			수산바이오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	
			냉동공조공학전공		3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3	
		전자전기 정보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3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3	
			나노반도체공학전공		2	
			전파융합공학전공		3	
			데이터사이언스전공		2	
		인공지능 공학부	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		2	
			컴퓨터공학전공		2	
		물류시스템공학과			3	
		환경공학과			2	
		토목공학과			2	
		인 문 · 사 회	해양 인문 사회 과학 대학		해운경영학부	
국제무역경제학부				6		
해사법학부				4		
국제관계학과				3		
해양행정학과				2		
해양영어영문학과				2		
동아시아학과				2		
합 계				약간명(27명 이내)		

※ 해양스포츠과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아래 자격요건 및 지원자격 세부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모집정원	지원대상	자 격 요 건
입학정원 2% 이내	영주교포 자녀 국외근무자 자녀	1)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2)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재학한 자 3) 영주교포 및 국외근무자(국외근무/사업/영업/유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정원제한 없음	전교육과정이수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2023.02.28.까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지원자격 세부 인정 기준

■ 공통사항

• 영주교포(자녀)의 정의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국외에서 3년(1,095일) 이상 영주교포로 체류한 자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이 없는 국가임을 확인)의 경우 중·고교 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한 자

•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함

지원자격 세부 인정 기준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 분	내 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 국외근무 재직기간 및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학력 및 재학기간 인정 기준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본교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개시 전일.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전체 이수 학기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지원자격 세부 인정 기준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1년 2학기제 운영 기준)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함
- 3학기제나 쿼터제인 경우 해당학기(3학기 또는 4학기)를 이수해야 함

• 중복학기 인정 기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외국학교 인정 기준

- 부모의 근무(파견)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인정함
 - ※ 부모의 근무 국가가 적성 또는 위험 국가인 경우에도 제3국 소재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지원자격 세부 인정 기준

■ 기타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국내 국적법(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거주(체류) 기간, 재학 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본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4

전형요소 및 배점

① 전형요소 및 배점

계열 구분	전형요소(면접고사)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	비 고
전 계열	100점	5점 이내	

② 면접고사

가. 대상자: 지원자격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자

나. 면접방법: 비대면고사 실시(답변영상 촬영 후 제출)

- 문제공개 및 답변제출: 2022. 8. 18.(목) ~ 8. 23.(화)

- 면접고사: 2022. 8. 25.(목) 14:00

- 면접고사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www.kmou.ac.kr/ipsi/main.do)

다.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인 성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	25	
	자기극복의지	15	
전공적합성	전공관련 기초지식	20	
	전공에의 열정	20	
발전가능성	학업계획 및 미래설계	20	
합 계		100점	

-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1인을 평가함

- 면접고사 점수는 면접위원 평가점수를 평균함

※ 면접고사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예, 60.15 ⇒ 60.2)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가산점

- 가. 대상자: 재외국민(입학정원의 2%이내 선발) 지원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를 제출 한 자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다. 가산점 부여: 4급 이상부터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6급-5점, 5급-3점, 4급-1점)

5

합격자 선발 방법

① 합격자 선발 기준

- 가. 재외국민(입학정원의 2% 이내) 전형 지원자
 - 면접고사 점수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① 단과대학별-모집단위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② 모집 단위별 상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③ 단과대학별-모집인원에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타 단과대학에서 선발·충원

- 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
 - 면접고사 점수를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전원 합격자로 선발

② 불합격 처리 기준

- 가. 면접고사 취득점수가 60점미만(과락)인 자
 나. 면접 동영상 기간내 미제출자
 다. 제출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자
 라. 지원자격 심사결과 부적격자
 ※ 해사대학 지원자의 경우 선원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원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③ 동점자 처리 기준

- 가. 1순위 : 인성 평가점수 상위자
 나. 2순위 : 전공적합성 평가점수 상위자
 다. 3순위 : 발전가능성 평가점수 상위자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①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22. 9. 15.(목) 14:00 예정

나.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mou.ac.kr>)

②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및 등록금 납부

가.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문서 등록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버튼' 클릭(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없음)

구 분	일 정
온라인 문서등록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총원합격자 발표 및 온라인 문서등록	2022. 12. 20.(화) 10:00 ~ 12. 27.(화) 16:00
등록금 고지서 출력	2023. 2. 7.(화)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10:00 ~ 2. 9.(목) 16:00

나. 온라인 문서 등록,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등은 합격자 발표 시 상세히 안내함

다. 지정된 등록 기간 내 온라인 문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③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 온라인 문서 등록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다.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됨

라. 본교에 합격하고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 등록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함

7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공통서류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③ 종합기록표(학생, 부모) ④ 선원건강진단서 제출(해사대학 지원자에 한함) ⑤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재외국민 (유형Ⅰ)	영주교포 자녀 국외근무자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현직회사근무자, 유치과학자/교수, 외국유학연수자, 해외 선교활동, 자영업자, 기타 재외국민)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주1)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⑦ 여권사본(부모, 학생) ⑧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⑨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주2)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⑩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⑪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⑫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주3) 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소지자에 한함)	*영주교포 자녀: 영주권 사본(부모, 학생) *상사직원 해외지사 등의 설치인증 허가서 사본 *(주4) *유치과학자, 교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자영업자, 법인: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유학: 사실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유형Ⅱ)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신분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유형Ⅲ)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③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등본에 가족 모두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 제출)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하였을 경우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주2) 재직(경력)증명서상 해외 파견(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지사/공장)명은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나오는 법인(지사/공장)명과 일치되어야 함 (재직기관의 본사 인사권자 발행)

*(주3) 세금납부사실증명서는 외국정부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 사실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주4)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서는 반드시 본사나 외국환은행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는 파견(근무)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재직증명서상 파견기간이 “2021년 4월 1일 ~ 현재(계속)” 이라면, 신고수리일이 “2021년 3월 ○○일” 인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서류가 필요함

②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7. 4.(월) 09:00 ~ 2022. 7. 15.(금) 18:00**

※ 모든 서류는 **서류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대학교 입학본부

다. 제출방법 : 발송용 봉투라벨(접수완료 후 출력가능)을 붙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③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원본 확인 후 반환함
(사본일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 가능)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함**

※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2023. 2. 9.(목)까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

다.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해당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추가서류 제출 안내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1) 제출대상

- 최종 합격 및 등록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한 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
-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장 확인으로 갈음함**

3) 제출방법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서 발급문의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00)

나. 지원자격 관련 서류

- 1) 제출대상 :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일(202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 원서접수 시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제출서류 :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서 및 위임장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

다. 제출기한 : 2023. 3. 2.(목)까지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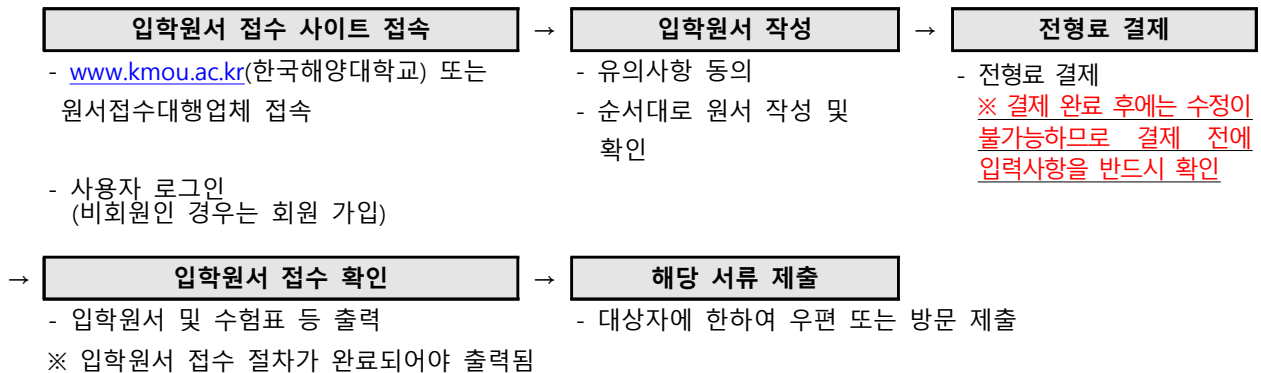
8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일정

가. 접수기간 : 2022. 7. 4.(월) 09:00 ~ 2022. 7. 8.(금) 18:00

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② 원서접수 절차



③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전에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은 2022. 7. 8.(금) 18:00까지이며, 모든 기재 사항을 입력하고 전형료를 결제
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짐

다. 원서 접수 시 입력 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함

라.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였더라도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우리 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
 - 지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생부 자료 등
 - 학교정보: 최종학력,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고교 FAX번호 등
 - 기타: 추가 연락처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학 입학, 장학, 학사, 통계 업무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타 안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함

제공받는 곳	제 공 정 보	목 적
한국해양대학교	학사과, 재정과	학적생성, 학력조회, 장학생선발 등
	학생복지과, 학부(과)	OT, 입학식 안내
	생활관	생활관생 선발, 기타 안내
	평생교육원	어학강좌 프로그램 안내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반자 조회 등

- 합격자(등록자)의 개인정보는 학사정보, 취업정보, 학술정보, 공학인증, 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웹 메일 사용자 정보, 웹 디스크 사용자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정보로 활용함

4 전형료

가. 전형료 내역

구 분	전 형 료				접수 수수료
	일반관리비 (1단계)	면접고사료 (2단계)	감면액	계	
전 모집단위 (북한이탈주민 제외)	34,000원	20,000원	-	54,000원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
북한이탈주민	34,000원	20,000원	54,000원	0원	

※ 전형료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전형료 반환

- 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함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형료 전액 반환
 - 1단계 불합격자(지원자격 결격자, 서류 미제출자) : 면접고사료 반환

※ 면접고사에 단순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는 면접고사료를 반환하지 않음
- 2)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름
-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4) 입학전형료를 반환 받기 위해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① 반환 대상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 ②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9

지원자 유의사항

- ① 모든 지원자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하여야 함
- ②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모집단위 또는 지원유형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③ 구비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모집요강에서의 요구 사항 불이행, 주소의 불명, 연락 두절, 합격자 명단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취소 등)은 지원자본인이 감수해야 함
- ④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사본일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공증 후 제출),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본을 공증을 받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해당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⑤ 제출서류가 우편 배달사고 등의 사유로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원본 서류 반환 요구 시에는 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야 함
- ⑥ 외국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면제)
- ⑦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⑧ 합격통지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납부고지서는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www.kmou.ac.kr)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함
- ⑨ 신입생은 입학년도의 1학기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단, 병역의무 수행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
- ⑩ 예비합격후보자는 원서상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교 입학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학원서 변경요청서」를 제출 후 우리 대학교 입학본부(051-410-4776~9)로 연락하여야 하며, **충원합격자 통지 시 3회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 ⑪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서류의 위·변조,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 등)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⑫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10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 ⑬ 대학입학전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음
- ⑭ 해사대학 입학예정자는 일정기간 승선생활 적응교육을 받아야 함

15 입학전형과 관련한 변경 및 추가 사항 등 모든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 (www.kmou.ac.kr/ipsi/main.do)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함

16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17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본부 입학과
(우편번호 49112)

○ 전화번호 : (051) 410-4776~4779, FAX : (051) 405-0509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입학 취소 안내

1. 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수시모집 전형을 포함하여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개 전형이란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함
(“재외국민 특별전형”포함)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3.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및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포함) 수시모집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1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4.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우리 대학교 등록포기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서식 1>

2023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지 원 사 항	1유형(재외국민) : 영주교포 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현지법인 직원 자녀 ☐ 자영업자 자녀 ☐ 해외유학 연수자 자녀 ☐ 해외 선교활동 ☐ 2유형 : 외국의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 해당란 ☒ 에 체크(1유형은 해당란에 모두 체크)										
	유 구 분	☐ 1유형 ☐ 2유형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3.5cm×4.5cm)	
		영 문									
	주 민 등 록 호				국 적						
	지 원 모 집 위	대 학			학 부(과)						
	출 신 고 교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예정 ☐ , 졸업 ☐)						
연 락 처	연 락 번 호	*가능한 연락처번호 모두 기재 바람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의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주 소					지원자 E-mail					
보 호 자	부	성 명						국 적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외 국 인 사 항	(시민권 번호)		(시민권 취득일)		년 월 일				
		교 포 사 항	(영주권)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모	성 명						국 적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외 국 인 사 항	(시민권 번호)		(시민권 취득일)		년 월 일				
		교 포 사 항	(영주권)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서류심사 탈락시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서명)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수험번호	※			

※ 유형구분 : 1유형(입학 정원의 2% 이내 모집대상자), 2유형(입학 정원의 제한이 없는 모집대상자)

※ 원서접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APPLICATION TICKET (수험표)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Number (수험번호)	※
Name (성명)	
College (지원대학)	대학
Division (Department) [지원학부(과)]	학부(과)
PHOTO (사진) (3.5cm×4.5cm)	

한국해양대학교

※ 주의사항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하여 다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1 >

종 합 기 록 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대학 학부(과) 성명 ()

지 원 유 형										
①영주교포 자녀	②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③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④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⑤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자영업자 자녀	⑦현지회사 직원 자녀	⑧해외유학연수자 자녀	⑨해외 선교활동	⑩전교육과정 이수자	⑪북한이탈주민 자녀

☐ 지원자 학력사항 기재(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학 교 명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해당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재학기간		년 개월	외국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 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교포 학생 기재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년 월 일)					최종 귀국일(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지원자: 2021. .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2 >

종 합 기 록 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대학 학부(학과) 성명 ()

☐ 보호자 외국 체류기간 기재(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기재)

구 분	외국 체류기간		소재지		보호자의 외국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학년. 학기에 줄(<----->)로 표시																														
	기 간	체류년수	국가명	도시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모(母) 성 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총 계	년 개월																																	
교포 기재란(부)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	년	월	일												최종 귀국일()	년	월	일												
교포 기재란(모)	영주국()	영주권번호()			최초 출국일 ()	년	월	일												최종 귀국일()	년	월	일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1. . . .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 · 과학 ·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 경시대회(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 작성 불가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

5.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에는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6.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 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공통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4. 해당 학과를 선택하게 된 지원동기를 기술하고, 입학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건 강 진 단 서

CERTIFICATE OF MEDICAL EXAMINATION

22

※ 비 고

- ① 한 항목이라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야 하며, 공인된 전문의의 선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② 검사 의사명 및 서명란에는 의사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함
- ③ 발급 의료기관명에는 의료기관명 기재 후 반드시 날인함
- ④ 건강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및 발급분에 한함
⇒ 검진 후 진단서 발급 소요기간이 최대 7일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전 검진 완료 권장
- 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건강진단서 국외 발급자는 공증 받은 경우만 인정)
- ⑥ **각 지방청에 신고 되지 않은 의원 및 보건소는 불가함**
⇒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 공지사항 참조

〈서식 5〉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부(과)		지원자격 구분	
◆ 코로나-19(COVID19), 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으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제출서류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4. 12.>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
·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또는 중질지(80 g/㎡)]

(뒤쪽)

유의사항 Notice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Where a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별 표 1】

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 판정기준

【관련규정: 선원법 시행규칙 53조 제4항】

검사 항목		판 정 기 준
시력		■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 ■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의 거리에서 두 눈의 시력을 통합한 교정시력이 0.4 이상일 것
체격		심한 신체의 박약, 심한 흉곽발육의 불량 그 밖에 선박내의 노동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 폐, 늑막, 심장 또는 신장의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 것
청력		항해융합학부,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는 두 귀 모두,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부(기관전공)은 한 귀 이상이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속삭임을 청취할 수 있을 것. 다만, 선원으로서의 종사경력에 비추어 관련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색각		적, 청, 황, 녹의 구분이 가능할 것(색각 안경 등 교정기구 사용 가능)
운동기능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손가락·손·팔뚝 또는 신체 각 부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다만,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거나 보조기를 착용한 경우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병후쇠약		병후의 쇠약에 따라 일정기간내의 승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혈당		공복시 125 mg/dl 이하일 것
간장	SGOT	50 IU/L 이하일 것
	SGPT	45 IU/L 이하일 것
C.B.C (빈혈)	RBC	4.2~6.3
	Hb	남자 12.0 이상, 여자 10.0 이상
	Hct	36.0~52.0
	MCV	79.0~96.0
	MCH	26.0~33.0
	MCHC	32.0~37.0
	WBC	4.0~10.0
RPR(VDRL) (매독검사)		
소변검사		
※ 비고 (1) 검진 의사는 정상기준치 및 질병의 경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위 표의 검사항목 중 시력과 관련하여 두 눈 중 최소한 한쪽 눈의 경우에는 안구질환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별 표2】

입학관련 학내 전화번호

☎ 주요행정부서

구 분	안 내 부 서	전화번호(지역번호 : 051)
대학입학전형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관리팀	410-4776~9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정책팀(입학사정관)	410-5361, 5364
	입학본부 입학과 입학홍보팀	410-5203, 5362
학사(휴학, 전과 등)	교무처 학사과	410-4714(휴학), 4018(전학.전과)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생처 학생복지과 장학지원팀	410-4028~9
등록금	사무국 재정과	410-4041
기숙사	승선생활관(해사대학 학생)	410-4193, 4650, 4652
	학생생활관	410-4096~7

☎ 단과대학 및 학부(과)

단과대학	학부(전공). 학과		전화번호(지역번호:051)
해사대학 (행정실: 410-4176, 4178, 4183)	항해융합학부		410-4230, 4270, 4640
	기관시스템공학부		410-4250, 4830, 4660
	해양경찰학부(항해전공, 기관전공)		410-4225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		410-5390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실: 410-4744, 4224 410-5213~4)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410-4300
	해양공학과		410-4320
	에너지자원공학과		410-4680
	해양공간건축학부		410-4580
	해양과학융합학부	해양환경학전공	410-4610
		해양생물공학전공	410-4750
		수산바이오공학전공	
	해양스포츠과학과		410-4790
	기계공학부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10-4290
		냉동공조공학전공	410-4360
	해양신소재융합공학과		410-4350
	전자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410-4410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10-4310
		나노반도체공학전공	410-4780
		전파융합공학전공	410-4420
		데이터사이언스전공	410-4370
	인공지능공학부	지능제어시스템공학전공	410-4340, 4570
		컴퓨터공학전공	
	물류시스템공학과		410-4330
	환경공학과		410-4415
토목공학과		410-4460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410-4028~9)	해운경영학부		410-4380
	국제무역경제학부		410-4400
	해사법학부		410-4390
	국제관계학부		410-4455
	해양행정학과		410-4730
	해양영어영문학과		410-4590
	동아시아학과		410-4690